

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요약

I. 추진 배경

□ 수립 배경

- 「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(2010~2014)」이 마무리됨에 따라,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의 방향 및 주요 과제를 제시

-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감소*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, 학기 초 및 취약학교에서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,
 - 피해·가해 학생 차원을 넘어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응 요구

* 학교폭력 피해응답율 : ('12.2차) 8.5% → ('13.2차) 1.9% → ('14.2차) 1.2%

- 가정·학교·사회 폭력이 상호 연관되는 사회 전반의 폭력문화 개선 노력 필요

※ 가정폭력, 학교폭력의 피해가 클수록 자살 충동 자주 경험, 부모학대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가능성 증가[보건사회연구, 한국청소년연구, '14]

□ 주요 경과

- 「제3차 기본계획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('14.4~8월,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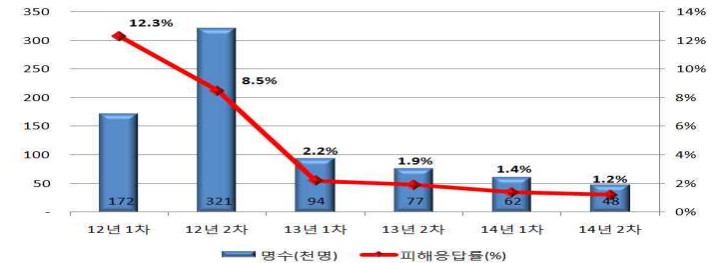
- 「제3차 기본계획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연구팀* 운영 ('14.8~11월)
 - 학교폭력 대책의 성과 및 한계점 분석, 3차 기본계획 방향 및 과제 발굴

* 학교폭력 관련 분야 학계, 현장 교원, 유관단체, 전문가 등 26명 참여

- 관계부처, 시도교육청 과제발굴 및 의견수렴 ('14.9~11월)
-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('14.11.25)
-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, 유관기관 등 시안 협의(~'14.12.8)
- 제6차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개최 ('14.12.9, 위원회 안전 사전검토)

II. 그간의 주요 성과 및 한계점

-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
 - * ('12.2차) 8.5% → ('13.1차) 2.2% → ('13.2차) 1.9% → ('14.1차) 1.4% → ('14.2차) 1.2%



<연도별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 변화>

- 학생보호인력, 학교내 CCTV 등 안전인프라 양적 확대,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

구 분	또래활동			이울림 적용학교	어깨동무학교
	학생자치법정	또래조정	또래상담		
2012	660교	79교	4,638교	-	-
2013	1,045교	1,448교	5,217교	300교	1,000교
2014	1,580교	845교	6,396교	502교	2,864교



※ CCTV대수(고화소비중) : ('13) 141,790대 (10.5%) → ('14) 164,428대 (25.5%)

※ 학생보호인력:('13)11,509명→('14)13,379명 /학교전담경찰관:('13)681명→('14)1,068명

- Wee프로젝트* 확대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·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지원 강화
 - * Wee(We+Education+Emotional),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게 종합적인 진단·상담·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

구 분	Wee프로젝트			전문상담인력	
	Wee클래스 (학교 단위)	Wee센터 (교육지원청 단위)	Wee스쿨 (시도교육청 단위)	전문상담교사	전문상담사
2009	1,530교	80개소	-	779명	1,614명
2014	5,633교(268%↑)	188개소(135%↑)	9개소(900%↑)	2,009명(158%↑)	3,590명(122%↑)

정책 추진의 한계점

- ◆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의 양적 증가에 상응하는 질적 제고와 함께 체험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
- ◆ 학교폭력 신고효과 및 이해관계인 만족도 제고 필요
- ◆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사후관리 및 회복지원 내실화
- ◆ 학교폭력과 연계된 가정, 사회 전반적인 폭력문화 개선 필요

Ⅲ. 정책 추진방향

비 전	행복하고 안전한 학교
목 표	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
전 략	◆ 전반적 학교 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 중점 관리 ◆ 대상별·유형별·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◆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

5대 분야	16개 추진과제
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	1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
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	5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6 학생보호인력 확충 7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
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	8 학교폭력 조기 감지·신고 체계 강화 9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10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
4 피해학생 보호·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	1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12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1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
5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	14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15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6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

Ⅳ. 주요 추진과제

1.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

① 인성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

내실화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강화

- (유아) 누리과정을 통한 바른 인성의 기초 형성 (교육부, 복지부, 법무부)
- (초·중·고) 바른생활도덕 등 관련 교과 내 생명존중의식 함양 교육 확대 (교육부)
- 봉사·동아리 활동 등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생명존중 교육 실시 (교육부)

내실화 배려심 증진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

- 올바른 생활예절 교육 및 학교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(교육청)
- 협동심, 질서의식을 체득할 수 있는 학교 체육 활성화 (교육부, 문체부)
- 예술교육을 통한 존중과 배려, 감성 등 인성함양의 기회 확대 (교육부, 문체부)
- 숲 체험 등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(교육부, 산림청)

내실화 교과 교육과정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체계화

- 관련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 내실화 (교육부)
 - * 사회, 도덕, 체육, 기술·가정, 보건 등의 교과에 학교폭력 예방 및 공동체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체계적 반영

신규 안전교과(단원) 신설 및 주요 교과에 ‘학교폭력예방교육’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(교육부)

- (초1~2) 「안전생활」 교과 신설 검토(‘15), (초3~고3) 관련교과에 「안전」 단원 신설

- 7대 안전교육 표준안*에 폭력·신변 안전 내용 포함, 체험중심 교육 실시
 * 7대 안전교육 표준안 : 재난안전, 생활안전, 교통안전, 폭력·신변안전, 약물·유해물질 안전 인터넷 중독, 직업안전, 응급처치

- 국어·영어 등 주요교과 내에 수필, 에피소드 등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지문 내용 포함 및 활용

②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

내실화 학생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

- 또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교폭력 예방과 친구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 (교육부, 여가부)
 - 학생들이 상호간의 교우관계 문제, 갈등상황 등에 대하여 상담,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, 캠페인 등 예방활동 전개
 -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활동을 선도하는 '친구사랑 동아리' 운영
 - ※ 또래상담 : ('12) 4,638교 → ('13) 5,217교 → ('14) 6,396교
 - ※ 또래조정 : ('12) 79교 → ('13) 1,448교 → ('14) 845교
 - ※ 블루밴드 동아리 : ('12) 100교 → ('13) 150교 → ('14) 200교
- '학생자치법정' 운영을 통한 학교의 준법의식 제고 (교육부, 법무부)
 - ※ 학생자치법정 : ('12) 573교 → ('13) 1,045교 → ('14) 1,580교
- 학생이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동아리 지원 확대 (교육부)

내실화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

- 학교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지원·육성 (교육부)
 - 학교의 특성과 외부자원, 위험요인, 내부역량 등 분석을 토대로 특색있고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 시행(초·중·고 약 3,000개, 어깨동무학교)
 - 학교폭력 발생 등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학교 선정 지원
 - ※ 시·도교육청별 단위학교의 5%~10% 내외 자율 선정 지원
 -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산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
 - * 교우관계 개선 등 학교폭력 예방 중심 자유학기 운영 모델 개발·보급
-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교 1브랜드 운동 전개 (학교)
 - 학교의 학사일정과 연계한 상담, 예방활동, 캠페인을 전개하는 '친구사랑주간' 운영 등 프로젝트 주간 운영
 - '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수칙' 등 실천운동 전개

③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

확대 우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산

- 학생간 갈등해결,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(어울림) 개발·보급 및 적용 확대 (교육부)
 - 초·중·고 모든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, 주기적 수정·보완된 프로그램의 시범적용을 위한 우선적용학교 운영(매년 500교 수준)
- 부처별 전문 영역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·적용 (미래부, 법무부, 여가부, 방통위, 산림청 등)
 - ※(예:법무부) 학교폭력 방관자 인식개선용 행복나무(초)·마음모아 토크(중) 프로그램
- 학교폭력 전문 민간단체 등 개발 우수 프로그램 발굴·보급 (교육부)
 - ※ (YWCA&포스코) 의사소통 분야 '공심통심'('13)

확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

- 학교폭력 예방 체험형 프로그램 확산 (교육부, 문체부, 법무부, 경찰청)
 - 감성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연극, 뮤지컬, 독립영화 등 제작 지원 (교육부, 문체부)
 - 학교폭력 연관 주제 문화 공연물 학생관람 요금할인 지원(문체부)
- 신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(가칭) '학교폭력 예방 테마공원' 운영 추진
- 경찰활동 체험을 통해 준법의식을 고양하는 '청소년 경찰학교' 확대 운영 (교육부, 경찰청)
 - ※ '14.10 현재 전국 19개소, 511회(10,248명) 운영
- 슬로몬로파크 등 법질서 체험장을 확대하고 체험형 법교육 활성화 (법무부)
- UCC, 웹툰, 역할극 등 학생들이 직접 기획·제작 참여 예방활동 추진 (교육부)

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

내실화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

- 언어폭력 개선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과정 연계 실시
- 바른언어 활용 확산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별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보급·활용
- ‘바른말 고운말 주간’ 등 학생중심 언어문화 개선 운동 전개 (교육부, 문체부, 방통위)

신규 ‘청소년 언어 청정학교’ 지정 및 운영 (교육부, 문체부)

- * ‘바른말 누리단’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적합한 바른언어 사용가이드 제공
-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원 언어순화 운동 실시(학교, 교육청)
- 텔레비전 등에서 사용하는 저속하고 폭력적인 언어사용 규제 (방통위)

내실화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

-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및 악성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 교육 강화(교육부, 미래부, 방통위)
- 청소년대상 사이버폭력 유형별 매뉴얼 제작·보급 (방통위)
- 청소년 주도 선플달기 운동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

신규 사이버폭력 대응 가상체험 및 연구학교 운영 (미래부, 방통위)

- 사이버폭력 가상체험 시뮬레이션 제품 개발 및 시범 서비스 추진
-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, 사이버 인성교육학교, ‘사이버 안심존’ 운영

내실화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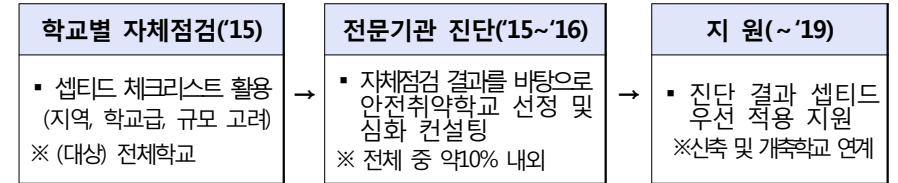
- 따돌림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학급 내 집단 따돌림 피해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고 예측, 조기 개입 프로그램 활용(교육부)
- 다문화가정 및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전반의 인식 개선 (학교, 교육청)
-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및 장애이해 교육 실시 등

2.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

1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

신규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(CPTED) 적용 확대

- 학교폭력 위해요인 해소를 위한 CPTED 진단 및 단계별 적용 (교육부)



- 학교 신축 및 개축 시 CPTED 적용 의무화 (교육부)
- 신·개축 학교 대상 “범죄예방환경설계(CPTED) 모델 및 가이드라인” 보급

확대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통합지원체계 구축

- CCTV 확충 및 기능 고도화 (교육부, 행자부, 안전처)
 - 학교 내외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
 - 개인식별 가능 100만 화소이상 고화소 CCTV 비중 50%까지 확대(~'19) (교육청) 및 지능형 CCTV 개발 (교육부, 미래부)
 - ※ '14년 현재 전체 CCTV 중 100만 화소 이상 CCTV 비중은 25.5%(41,824대)
- CCTV 실시간 관제 기능 강화 (교육부, 행자부, 복지부, 안전처)
 - 관제시설 확충·재배치 및 운영 효율화, 학교내 CCTV 관제전담 요원 배치 확대 추진
 -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학교 CCTV 연계 확산 추진(~'19) (행자부, 교육청)

확대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

- 외부인 식별체계 도입 등 학교 출입에 대한 관리 강화 (교육청, 학교)
- 긴급 상황 발생에 대한 단위학교 대처역량 강화 (교육부, 경찰청, 지자체, 학교)

② 학생보호인력 확충

확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

-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으로 1인 10개교 체계 확립 및 효율적 운영 (기재부, 교육부, 행자부, 경찰청)
※ 경찰 증원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지속 추진
- 우수인력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검토 (경찰청)
-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(교육부, 경찰청)

확대 학교보안관,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

- 취약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등 취약시간 대 학교보안관,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2명 이상 집중 배치 (교육청, 학교)
- 학생보호인력 교육여건 마련 및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 (교육부)

③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

확대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강화

-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안전지역 확대 (교육부, 행자부, 복지부, 경찰청, 식약처)
 - 부처별 운영 중인 4종의 안전구역(어린이보호구역, 아동보호구역, 식품안전보호구역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)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등

내실화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강화

- 청소년 유해업소(출입금지 및 제한업소) 단속 강화 (경찰청, 지자체)
 - 연령별·게임등급별 영역 구분 검토, '모범 PC방'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등(문체부)

- 인터넷·게임·영상물 등에 대한 유해성 심의 및 관리 강화 (문체부, 여가부)
 - '게임시간선택제', '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'(셋다운제) 운영, 유해성 심의 및 사후모니터링 강화,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

확대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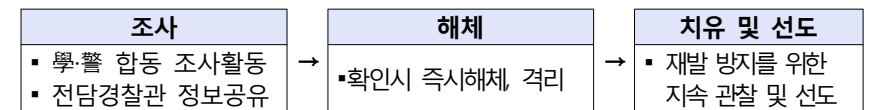
- 초등학교 학생 대상 U-안심알리미 보급 확대 (교육부)
- 스마트폰 보유 학생 안전 앱서비스 운영 및 보급 확대 (미래부, 방통위, 안전처 등)

3.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

①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

내실화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

- 담임교사의 학교폭력 징후 감지 등 학생 생활지도 역할 강화 (학교)
 - 주기적으로 학급내 학생별 학교폭력 안전 수준 진단도구 활용
 - 학기초 학생·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등 주기적 상담 및 소통 채널 마련
※ 기관별(학교용, 가정용)·대상자별(학급용, 초·중·고용) 안전도 수준 진단도구 활용
 -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 및 지도
- 학교단위 다양한 학교폭력 감지체계 마련 (교육청, 학교)
 -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, 신고 및 상담창구 다양화
 - '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(스마트안심드림)' 보급 (방통위)
- 폭력서클 관련 등 고위험학생에 대한 조기 감지 및 대응 강화 (교육부, 경찰청)



- 폭력서클 관련학생의 일탈 원인을 감안한 맞춤형 대응 추진 (교육부, 법무부, 여가부)

내실화 117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

- 117 신고·상담센터 접근 매체 다양화 및 신고 활성화 (교육부, 여부, 경찰청)
- '117 채팅신고 앱' 기능개선, 117 신고·상담센터 상담 역량 강화
- 학교폭력 익명 상담·신고 서비스 활성화 (교육부)

내실화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

- '학교폭력 내비게이터 安.테.나*' 서비스 실시 (교육부)

<학교폭력 내비게이터 安.테.나>

- * 안전한 테두리를 찾아주는 나침반 : 피해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, 특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관, 관련 Q&A 등 정보 제공

- '도란도란(Stopbullying)'을 통하여 학교폭력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(교육부)

2 사안처리 공정성 확보

내실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객관성·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

- 자치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가* 참여 확대(교육부, 교육청)
* 법조인, 의료인, 경찰, 청소년 전문가 등
- 사안별 분야 전문가 참여, 내부 교원 및 학부모 비율 조정 등
-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효율화 (교육부, 교육청)
- 결정과정 중 이해관계인 진술 기회 확대를 통해 결정의 수용성 제고 (학교)
- 재심제도 개선 및 청구 내용·조치 결정 통보 공유 등 부작용 최소화
- 학교 공동(교육지원청)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·운영 검토
※ 소규모 학교의 지역단위 공동위원회 운영 방안 등 검토

내실화 학교폭력 사안 은폐·축소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

- 학교폭력 은폐·축소 또는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조치 강화 (교육부, 교육청)

신규 학교운영의 특성상 주의의무 필요 학교 관리자 책임강화 (교육청, 학교)

- 중앙 및 교육청 단위에 '사안처리 점검·지원단' 운영(교육부, 교육청)

3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

확대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

- 교원의 직위별 학교폭력 직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(교육부, 교육청)
* 교육장·학교장 등 관리자 및 교사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포함
* (예비교원) 의사소통, 학생 상담, 학교폭력 예방 실무역량
- 학교의 여건에 맞는 '학교별 예방 대책'(학교계획) 수립 (학교)
-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생활지도 연계협력 지원강화(교육청)

내실화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확대

- 학교폭력 전담교원 수업시수 경감, 포상 등 사기진작 확대(교육부, 교육청)
- 학교폭력 전담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 확대(교육부, 교육청)

4.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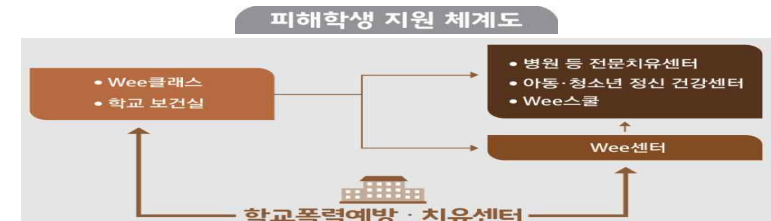
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

확대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

-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학생 지원체계 강화 (교육청, 학교)
- 피해학생 상담을 위한 Wee클래스 확대(학생 101명 이상 학교, ~'19년)
※ 학생 101명 이상 중·고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(~'19년) (기재부, 교육부, 행자부)
※ ('14) Wee클래스 5,633개소, 전문상담교사 2,009명, 전문상담사 3,590명
※ Wee센터 : ('09) 80 → ('11) 126 → ('13) 155 → ('14) 188개
- 돌봄 기능이 강화된 '가정형 Wee센터' 확대 추진(희망교육청, ~'19년)

신규 Wee 스쿨 및 피해학생 특화 중앙 전문치유센터 운영 (교육부, 교육청)

- Wee스쿨 확대(모든 시·도교육청, ~'16년) 및 학교폭력예방치유센터 운영



내실화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 강화

-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-피해학생 1:1 멘토링 등 '경찰관 서포터 제도' 운영 (경찰청)
- 선치료비 지원범위·지원대상 기관 확대 및 신청절차 간소화
-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충동 등 문제군 학생 치유·회복 지원 (교육부, 복지부)
- '찾아가는 상담·치료', 가족 힐링,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 (문체부, 여가부)

확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

-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 지원 (복지부, 여가부)
-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(법무부)

2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

내실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

- 단위학교 중심의 가해학생 관리체계 강화 (학교)
 - Wee클래스(학교상담실) 중심의 가해학생 1차 상담 및 특별교육 실시
 - 보복행위 등에 따른 2차적 피해방지 목적의 학교장 긴급조치 확대 검토
-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 지원 확대 (교육부, 법무부, 여가부)



내실화 가해 유형·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

- 사이버폭력, 게임·인터넷 중독 위험군 전문 지원체계 구축(교육부, 미래부, 문체부, 여가부, 방통위)
 - 사이버폭력 피·가해자를 위한 지역별 거점 Wee센터 지정·운영(34개소)
 - 인터넷·게임 과몰입 부작용 해소 사업 지속 추진 (문체부)
- 소년사건화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체제 강화 (교육부, 법무부)

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

내실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화해 프로그램 운영

신규 '회복적 관점'을 적용한 '교우관계 회복기간' 운영 방안 도입

<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(안) >

1단계	▪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(서면개최 가능)
2단계	▪ 자치위원회 결정으로 '교우관계 회복기간' 부여(4주 내외) ※ '교우관계 회복기간' 운영 대상 기준 마련 필요
3단계	▪ 지도교사(담임교사, 상담교사, 책임교사 등)중심으로 다양한 활동(또래조정·상담 등 또래중심 자치활동, 가족·사제동행 캠프 등 체험프로그램, 어울림 등 공감의사소통 중심 프로그램) 실시 ※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시 외부전문기관·단체 참여 가능
4단계	▪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시 교우관계회복기간 운영보고서(피해·가해학생, 학부모, 담임교사 등 운영교사의 의견 종합 기술)고려하여 가해학생 조치결정 ※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)

내실화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활성화

- 화해·분쟁조정 및 안정적 회복 지원 (교육부)
 - 피해·가해 학생 분쟁조정 중앙지원단 및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
 - 예비교원(교·사대) 중심 (가칭) '학생 생활지도 자원봉사단' 운영
- 민간단체 및 기업 중심 분쟁 및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(교육부)

5.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

1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

내실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

- 가정 폭력 해소를 위한 가족관계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운영(여가부)
 -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 가족단위 상담,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

신규 출생신고시 단계별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(행자부, 여가부, 지자체)

- 대학 및 지자체의 교양강좌로 (가칭)'부모학' 등 강좌 추진(교육부, 지자체)

신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

- 자녀의 발달단계별 학부모교육 이수 및 성실 참여 의무화 추진
* 누리과정, 학교급별, (초(초1, 초4), 중, 고) 매3년 단위 1회 의무 이수 (교육부, 복지부)
- 학부모용 가이드북 보급 등 가정에서 인성 교육 실천 지원 (여가부, 교육부, 교육청)

2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

내실화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

- 지역의 학교폭력 협의체 운영 및 협력체제 강화 (행자부, 안전처, 교육청, 지자체)
- 시도단위 학교폭력 예방계획(연간) 수립·추진 및 유관기관 협력 등

내실화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강화

- 학교 정보공시를 통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
- 시·도교육청 및 시·도의 학교폭력예방 등 평가를 통한 역할 강화와 노력 유도 (교육부, 행자부)

내실화 지역사회의 자율규제활동 강화

- 지역상인조합 등 민간 중심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(교육청, 지자체)
-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운영 내실화 (방통위)

3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

신규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

- 폭력문화 개선을 위한 (가칭) '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체' 구성·운영 (교육부, 법무부, 국방부, 복지부, 여가부, 경찰청)
- 국가·공공기관 등 직장교육시 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(교육부, 노동부, 여가부, 인사처)

확대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동캠페인 추진

- 언론·시민단체 연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추진(교육부, 관계부처)
- 각종 온·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(교육부, 지자체, 관계부처)

V. 추진체계

□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·관리

- 기본계획(5년주기)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, 추진(관계부처, 시도, 시도교육청, 단위학교)
-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, 학교폭력대책 위원회 보고

□ 중앙부처, 시도, 시군구 단위 추진기구 운영활성화

-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: 반기별 1회
- (시·도)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: 분기별 1회 이상 개최
- 기관별 협력회의 소집 지원 및 추진상황 평가
- (시군구) 학교폭력지역협의회 : 상시적 업무협조
- 지역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등 운영 활성화